

# 규제프리존특별법 중 비식별화 관련 의견서

## -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항에 대하여 반대함 -

2017년 2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 대비라는 명목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을 협상 중입니다. 이 법 중 개인정보 보호 완화 관련한 우리 단체들의 우려와 반대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전달합니다.

- 다 음 -

첫째, 4차 산업혁명 대비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는 것은 소비자 및 이용자의 정보인권 침해입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에서는 ‘비식별화’ 조치를 이유로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식별화’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낸 데 이어 2017년 1월, 대통령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비식별화’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둘째, 미국과 유럽에서는 4차 산업에 대비하여 소비자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2016년 연달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사회가 4차 산업에 대비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 역시 소비자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빅데이터 처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들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의 국제적 흐름은 EU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 최근 미국도 동의 제도를 강화하는 등\*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부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Broadband Consumer Privacy Rules('16.12.2)에서 위치·금융·건강정보 등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며(opt-in 방식), 비식별정보에 대해 HIPPA Privacy Rule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음
-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외국과의 실물·데이터의 교류가 필수불가결함
  - 유럽시장 참여를 위해서는 유럽과 유사하게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이 경우 EU 적정성 평가(adequacy test)\* 통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 '18.5.25.부터 GDPR(EU 개인정보 보호 일반법)이 발효되면 그 효력이 역외 국가에도 미치게 되므로, 개인정보 처리가 위법할 경우 과징금 부과 및 소송 제기 등 법률적 문제에 직면하게 됨
  - \* EU가 타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EU 역내의 개인정보를 타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절차

(2017.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의견 중)

셋째, 현재 박근혜 정부와 업계에서 주장하는 '비식별화'는 '개인정보 아닌 것으로 추정'(법정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하여 개인정보 관련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외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나. (비식별 정보의 활용)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로 추정되므로 정보주체로부터의 별도 동의없이 해당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16. 6. 법정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중)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비식별 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로 복원 또는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으면 개인정보로 간주하며, 비식별 조치에 대한 구체적 개념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6. 11.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중)

특히 유럽연합에서 빅데이터 처리로부터 소비자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치로서 도입한 '가명'의 경우 일부 예외를 인정하였지만 여전히 '개인정보'입니다. 즉, '가명'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관련

법률들의 적용을 받습니다(우리 정보통신망법의 암호화 조치와 유사). 이는 성명 등을 가리는 조치를 형식적으로 취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비식별화’와는 다른 접근입니다.

(26) 개인정보보호원칙은 식별되었거나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적용될 수 있다. 가명처리 정보는, 추가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 어떤 개인이 식별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개인의 식별 등 처리자 또는 제3자 모두가 개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용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reasonably likely)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수단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별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 객관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하고, 처리 당시 가용한 기술과 기술적 발전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익명정보에는 개인정보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원칙은 식별되었거나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과 관련되지 않는 정보 또는 그런 방식으로 익명처리되어 더 이상 식별될 수 없는 정보주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은 통계목적 및 연구 목적 등을 위한 익명정보의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8)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는 해당 정보주체가 갖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으며 정보처리자와 수탁처리자가 그들의 개인정보보호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가명처리를 도입하는 것은 여러 어떤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방해할 의도가 아니다. (가명처리를 했다고 해서 정보보호 조치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 (2016. 4. 제정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전문 중)

넷째, **개인정보처리는 그 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규제프리존에서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적용이 배제된다면, 이 지역에서 기존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들이 허용하는 정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가공한 기업들이 이 개인정보를 **전국과 전세계를 상대로 이용, 제공 및 심지어 매매도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등 형식적으로 가리는 ‘비식별화’ 조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주체인 이용자나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한국인 개인정보가 매매되는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다섯째, **비식별화는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약학정보원 등은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4천4백만 명 국민의 처방정보를 당사자인 정보주체 동의 없이 미국 빅데이터 기업인 IMS헬스에 판매하였으며, 현재 형사재판에서 암호화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버드대 연구진이 IMS헬스에 판매된 한국인 주민번호의 암호를 성공적으로 해제하여 우리 국민을 충격과 부끄러움에 빠뜨렸습니다. IMS헬스로 유출된 우리 국민 처방전 정보는 회수되지 않았으며, 이 정보는 현재도 전세계를 상대로 판매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 개인의료정보 빅데이터 개방하겠다는데...

## '암호화된 주민번호' 너무 쉽게 풀렸다

정부가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암호화 등 비식별 조치해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미국에서 암호화된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100% 해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번역해 공개한 미국 하버드대학교 라타나 스와니 교수 연구팀의 2015년 논문 '처방전 데이터상 공유되는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의 익명성 해제를 보면, 연구팀은 한국인 사망자 2만3163명의 처방전 데이터의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해제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논리적 추론 방식과 자동탐색실험,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해제했다. 논리적 추론 방식은 각각의 자리에서 발견되는 문자의 빈도

미국 하버드대팀, 이미 지난해에 2만3천명 처방전 암호 100% 해제 "한국 주민번호 생일·성별 담겨 프로그램 몇번 돌리니 쉽게 풀러"

전문가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 본인 동의 없이 공개 말아야"

를 통해 어떤 자리의 어떤 수가 어느 문자로 치환됐는지를 추론하는 방식인데, 논문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임의번호가 아닌 생년월일과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개인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풀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

이드라인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를 비식별화(암호화)하면 이를 개인정보로 보지 않아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진료내역 등 5조 1027억건의 의료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빅데이터 산업에 활용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 등은 가리거나 암호화해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빅데이터의 속성상 작은 조각들이 연결돼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장욱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연구에서도 보듯이 비식별화된 정보는 언제든 재식별의 위험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처럼 이미 수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돼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흩어져있는 데이터들이 연결돼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비식별화의 문제가 확인된 이상 진료기록 등 민감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문은 또 "한국이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번호 체계로 개편하는 데 3조1000억~4조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 추정하지만, 만약 개편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와 이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위험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임의번호로 전면 개편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한겨레신문 2016. 9. 25.)

여섯째, 빅데이터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할수록 비식별 조치의 안전성 역시 점점 더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최근 미국과 유럽이 제도 개선을 통해 추구하는 바와 같이, **소비자와 이용자 모르게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처리를 알고, 선택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중 비식별화 조항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끝>